제3편 대학행정 3-2-9

## 명예학위 규정

2009. 06. 30. 최초제정

2012. 08. 01. 부분개정

2016. 04 .01. 부분개정

2024. 05. 01. 부분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명예학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학위증서 수여의 대상) 학위증서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- 1. 본 대학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로서,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명예를 빛낸 자
- 2. 재학 중 사망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, 타 학생의 귀감이 되었던 자
- 3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

제3조(학위증서 수여의 시기) 명예학위증서는 별지 제1호와 같이 수여하며 정규 학위수 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.

제4조(수여자의 대우) 명예학위 자는 본 대학 정규 졸업생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.

제5조(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명예학위수여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학위 심사위원회를 둔다.

-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6.04.01., 2024.0 5.01.>
- ③위원장은 학사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장으로 하며, 위원은 대학본부 부서장 및 해당학과 학과장으로 구성한다.<신설 2024.05.01.>

제6조(학적부의 기록) 명예학위 자는 학적부에 명예학위에 관한 사항을 등재한다.

제7조(학위의 취소) 명예학위 자가 본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,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경우. 총장은 명예학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편 대학행정 3-2-9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편 대학행정 3-2-9

### [별지 제1호 서식]

제 호

## 명 예 학 위 증 서

학 과 : 성 명 : 주민등록번호 :

위 사람은 본 대학의 학적을 보유하였던 분으로 우리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시고, 명예를 드높였으므로, 이에 명예학위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# 대전보건대학교 총장